

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김정도·김근한·김낙관·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·김춘남
박교상·신용하·양진오·이명희·정지원·허민근 의원(13명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청년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고 청년지원 사항을 확대·강화하여 관내 청년의 권익과 복리를 제고시키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~4조)
- 청년정책 기본·시행계획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-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참여단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5조)
- 청년의 권익증진 관련 사항(안 제16조~제3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1. 18. ~ 11. 23.) 결과 의견 없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를 보완·개선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부터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청년의 연령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주요 심의 기구인 <청년정책위원회>의 위원장을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하고, <청년정책참여단>에서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을 <청년정책위원회>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으로 예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